

의안번호	2213178
의 퇴 인	이재강 의원
회 답 일	2026. 4. 14.
추 계 번호	25B5307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반려동물사료 권장규격을 정하기 위하여 연구 용역을 실시하며, 반려동물사료 안전·영양기준 연구 등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9억 2,000만원(연평균 3억 8,4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 위원회 설치(안 제5조)	24	24	24	24	24	120	24
권장규격 (안 제6조)	300	—	—	—	—	300	60
안전·영양기준 연구 및 위해성 평가(안 제7조)	300	300	300	300	300	1,500	300
합계	624	324	324	324	324	1,920	384

주: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사업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사업의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사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반려동물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 설치)	반려동물사료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반려동물사료의 권장규격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2. 중대한 반려동물사료 안전사고에 대한 긴급대응과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반려동물사료의 안전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안 제6조(권장규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반려동물사료에 대하여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규격(이하 “사료공정”이라 한다) 외에 반려동물의 급식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영양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권장규격을 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공정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정된 사료공정이 반려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료공정이 설정되거나 변경되기 전까지 임시의 권장규격을 정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4	안 제7조(안전·영양기준 연구 및 위해성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의 특성에 맞는 영양학적 균형과 위해성 인자에 관한 연구 및 시험·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의 연구·시험·분석은 소속기관, 정부출연기관, 「사료관리법」 등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대학, 수의학 전문가 단체 등의 협업체계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사료의 안전기준, 권장규격 및 표시기준 등을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험·분석·연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5	안 제9조(긴급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긴급대응의 시행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필요한 범위에서 대응조치에 반영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판매 등이 되고 있는 반려동물사료가 유해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해 우려가 제기되고 그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3항) 1. 해당 반려동물사료의 종류의 공표 2. 해당 반려동물사료로 인한 위해의 종류 및 정도의 공표 3. 소비자에 대한 긴급대응 대처요령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2조(검사 명령)	사항 4.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생산·판매 등의 금지 또는 회수명령 5. 원인규명을 위한 검사명령, 추적조사, 역학조사, 검안·해부 명령 6. 그 밖에 위해방지 및 확산 차단에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집단 폐사, 질병 또는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반려동물사료를 생산·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검사결과는 위해성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기관·검사방법 및 검사인을 별도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음(제2항)	재량·의무 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시 위해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회수, 생산·판매금지, 표시기준 설정 등 안전조치의 판단 근거로 활용함(제4항)	재량·의무 규정
7	안 제13조(추적 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집단 폐사, 질병 또는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반려동물사료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이 있는 때에는 합동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함께 추적조사를 하여야 함(제1항)	재량·의무 규정
8	안 제14조(역학 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집단 폐사, 질병 또는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9	안 제15조(검안·해부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의 집단 폐사, 질병 또는 이상 반응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반려동물 사체의 검안 또는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검안을 우선 실시하되, 검안만으로는 원인 규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부를 명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급식 후 이상 증상으로 사망이 발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체의 검안 또는 해부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검안 또는 해부 명령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안·해부와 이에 수반되는 사체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6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16조(반려동물사료 안전정보망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에 관한 안전정보, 피해사례, 반려동물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집행 및 긴급대응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공개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사료안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사료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11	안 제17조(소비자 및 사업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이며 책임있는 반려동물사료의 안전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이 경우 소비자교육, 위해정보 신고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항)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검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동물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반려동물사료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반려동물사료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2	안 제18조(소비자 피해 보호 및 구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 우려가 있는 반려동물사료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에 따른 안전정보망을 활용한 피해사례의 수집, 관련 정보 제공, 소비자 보호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3	안 제1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반려동물사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 미대상: 반려동물사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반려동물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안 제5조(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 설치)	○	• 유사사례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
3	안 제6조(권장규격)	○	• 유사사례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
4	안 제7조(안전·영양기준 연구 및 위해성 평가)	○	• 유사사례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
5	안 제9조(긴급대응)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사료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긴급대응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 없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6	안 제12조(검사명령)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사료 위해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해성 평가 실시 또는 위탁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평가 방법·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사료대상 안전성 조사 관련 사업]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내용</th><th>'26예산</th></tr><tr><td>농산물안전성 조사 (6032-301)</td><td>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잔류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통해 부적합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사료대상 안전성 조사 예산이 포함됨</td><td>25,500 (268)</td></tr></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사업명	사업내용	'26예산	농산물안전성 조사 (6032-301)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잔류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통해 부적합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사료대상 안전성 조사 예산이 포함됨	25,500 (268)
사업명	사업내용	'26예산							
농산물안전성 조사 (6032-301)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잔류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통해 부적합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사료대상 안전성 조사 예산이 포함됨	25,500 (268)							
7	안 제13조(추적 조사)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반려동물사료로 인한 반려동물의 집단 폐사, 질병 또는 이상 반응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적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집단 폐사 등의 발생 여부, 검안·해부 실시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0개소를 대상으로 추적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4백만원=(재료비 0.5백만원 + 출장비 0.15백만원*2명)×30개소						
8	안 제14조(역학 조사)								
9	안 제15조(검안·해부 명령)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검안·해부와 이에 수반되는 사체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집단 폐사, 질병 또는 이상 반응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반려동물 사체의 검안·해부가 필요한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집단 폐사 등의 발생 여부, 검안·해부 실시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100두에 대하여 검안·해부 등을 실시하는 경우 5억 2,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521백만원=검사비 145백만원, 인건비 226백만원, 약독물 검사 100백만원, 협력진단 50백만원, 사체처리비 25백만원						
10	안 제16조(반려 동물사료 안전정보망 구축·운영)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사료안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대상 정보망 규모 및 구축·운영·유지·관리 비용 등은 ISP를 거쳐야 파악이 가능하므로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11	안 제17조(소비자 및 사업자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위하여 소비자, 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자·사업자·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기준·내용 등을 알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연관산업해외수출산업화 사업을 통해 사료 개발, 품질 고도화, 생산시설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내용</th><th>'26예산</th></tr><tr><td>반려동물산업화센터 조성</td><td>반려동물사료 산업화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해 사료원료 발굴, 연구개발, 생산시설 구축 등 지원</td><td>500</td></tr><tr><td>One-Welfare Valley 조성</td><td>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실증, R&D 등이 집적화된 종합인프라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고도화·활성화 지원</td><td>7,115</td></tr></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사업명	사업내용	'26예산	반려동물산업화센터 조성	반려동물사료 산업화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해 사료원료 발굴, 연구개발, 생산시설 구축 등 지원	500	One-Welfare Valley 조성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실증, R&D 등이 집적화된 종합인프라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고도화·활성화 지원	7,115
사업명	사업내용	'26예산										
반려동물산업화센터 조성	반려동물사료 산업화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해 사료원료 발굴, 연구개발, 생산시설 구축 등 지원	500										
One-Welfare Valley 조성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실증, R&D 등이 집적화된 종합인프라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고도화·활성화 지원	7,115										
12	안 제18조(소비자 피해 보호 및 구제)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는 소비자 피해 보호 및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13	안 제1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는 업무 위탁 대상 기관, 업무 위탁 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 설치(안 제5조)

-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개정안은 반려동물사료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규정
 - 본 추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유사 위원회의 구성·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추계
 - － 제정안의 위원 구성 요건¹⁾에 따라 위원회 정원 20명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가정
 - － 회의개최 횟수는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²⁾
-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1) 제5조(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 설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반려동물사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수의사로서 반려동물의 질병 또는 사료의 안전 및 영양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반려동물사료 관련 사업자, 일반 소비자단체 또는 반려동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소비자 대표, 동물보호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 중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 5., 222쪽)

[표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2023~2025년

(단위: 명, 회)

	위원 (A=B+C)	공무원 (B)	민간 위원 (C)	정원대비 민간위원 비율 (C/A)	최근 3년간 회의개최 횟수			연평균 (3년)
					2023	2024	2025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29	5	24	82.7%	4	4	2	3.3
농림식품과학기술 위원회	28	4	24	85.7%	5	6	4	5
평균	28.5	4.5	24	84.2%	9	10	6	4.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2025.10.

□ 추계 결과, 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억 2,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민간위원 수(A, 명)	20	20	20	20	20	—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
사례금 단가(C, 백만원/명·회)	0.3	0.3	0.3	0.3	0.3	—	—
추가재정소요 (D=A×B×C, 백만원)	24	24	24	24	24	120	24

주: 농림축산식품부 내 유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반려동물사료 권장규격(안 제6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사료 권장규격을 정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사료 권장규격을 정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억원(연평균 6,000만원)으로 추계
 - － 추계기간 중 첫해에 반려동물사료 권장규격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표 4]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구용역 내용	2026 예산
반려동물전주기 고도화 기술개발(1147-307)	반려동물사료 기준 및 규격제도 개선 연구지원	298

주: 해당 사업은 2026년 종료 예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표 5] 반려동물사료 권장규격 관련 연구용역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반려동물사료 권장규격 관련 연구용역	300	-	-	-	-	300	60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안전·영양기준 연구 및 위해성 평가(안 제7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사료 안전·영양기준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의 특성에 맞는 영양학적 균형과 위해성 인자에 관한 연구 및 시험·분석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5억원(연평균 3억원)으로 추계

$$- 300\text{백만원} = 5\text{과제} \times 60\text{백만원}$$

[표 4]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구용역 내용	2026 예산
축산시험연구 (1232-300)	반려동물사료 영양표준 연구지원	300
농산물안전성조사(농특) (6032-301)	사료표준분석법 연구(5과제×63.6백만원)	31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표 6] 반려동물사료 안전·영양기준 분석법 연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반려동물사료 안전·영양기준 분석법 연구	300	300	300	300	300	1,500	300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사업의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stone@assembly.go.kr